

부 산 세 관



수신 동일냉장(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특허보세구역 설영특허(갱신) 승인 통보 [동일냉장(주)]

귀사의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갱신 신청에 대하여 관세법 제174조 및 특허보세구역 운 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2021년 제4회 부산세관 자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다 음과 같이 특허갱신 결정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동 고시 제16조(특허장의 게시 등) 등 특허조건을 준수하여 보세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세구역명칭 : 동일냉장(주) 영업용 보세창고

나. 보세구역부호: 030-11597

다. 특 허 기 간 : 2021.05.01. ~ 2024.04.30.(3년) 라. 소 재 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170번길 10

마. 특 허 면 적 : 총 면적 17.694.59㎡

붙 임: 특허장 1부. 끝.



관세행정관 전대운 관세행정관

박하욱

수출입물류과 2021.4.29.

류경주

협조자

시행 수출입물류과-464 (2021. 4. 29.) 접수

우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본부세관 (중앙동4가) / www.customs.go.kr/busan/

전화번호 051-620-6122 팩스번호 051-620-1127 / bigcloud@korea.kr

/ 비공개(5,6)

특허번호 : 030-11597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운	① 법 인 명 (성 명)	동일냉장(주)						
영	② 사업자등록번호	603-81-11381						
인	③ 주 소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170번길 10 (신평동)						
	④ 보 세 구 역 명 칭	(한글) 동일냉장(주) 보세창고 종 류 영 업 용						
	3 4 1 1 1 0 0	(영문) DONGIL COLD STORAGE CO., LTD (창고유형) (냉장/냉동)						
	5 대 표 자	최 우 순 최 홍 래 생년월일 72.01.25 78.05.11						
	⑥ 소 재 지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170번길 10 (신평동)						
		철근콘크리트조 지상8층 건물 1동 중 지치 측 내자, 내도신(2선) 1522.02㎡ / 보드 242.75㎡						
특 허 내	⑦ 건물등 시설·구조·수·면적	지하1층 냉장·냉동실(3실) 1,532.93㎡ / 복도 243.75㎡ 1층 냉장·냉동실(2실) 1,098.93㎡ / 복도 737.10㎡ 2층 냉장·냉동실(3실) 1,827.45㎡ / 복도 243.75㎡ 4층 냉장·냉동실(3실) 1,827.45㎡ / 복도 243.75㎡ 5층 냉장·냉동실(3실) 1,827.45㎡ / 복도 243.75㎡ 6층 냉장·냉동실(3실) 1,827.45㎡ / 복도 243.75㎡ 6층 냉장·냉동실(3실) 1,827.45㎡ / 복도 243.75㎡ 7층 냉장·냉동실(3실) 1,827.45㎡ / 복도 243.75㎡ 7층 냉장·냉동실(3실) 1,827.45㎡ / 복도 243.75㎡ 8층 냉장·냉동실(3실) 1,410.93㎡ / 복도 243.75㎡ 합계 17,694.59㎡ (냉장·냉동실 15,007.49㎡/복도 2,687.10㎡)						
역	⑧ 설 비 수 용 능 력	23,677M/T						
	⑨ 장치·전시·건설물품종류	농축수산물, 식품, 의약품, 선(기)용품						
	⑩ 반 입 형 태	일반(포장)						
	① 작업의원재료							
	12 설치ㆍ운영의 목적	상기물품의 장치						
	[3] 특 허 기 간	2021.05.01. ~ 2024.04.30. ⑭최초특허일자 1993.05.14.						
	⑤ 특 허 조 건	가. 관세법령 등 관계 규정 준수 나. 상기 법령에 따른 세관장 명령 준수 다. 상기 사항 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발생 시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관세법」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보세구역을 특허합니다.

2021 년 04 월 28 일



부 산 세 관



지정번호: 030-11597

(일반)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

신	상 호	동일냉장(주) 사업자등록번호 603-81-11381						
청	주 소	(4944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70번길 10 (신평동)						
인	대표자	최우순,최홍래						
	보세구역명칭	동일냉장(주) 종류 영업용보세창고						
	소 재 지	(4944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70번길 10 (신평동)						
	지 정 기 간	2016.05.16 ~ 2024.04.30						
지 정 내 역	절차생략업무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가.「식품위생법」제10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의료기기법」제20조 및「약사법」 제56조,「화장품법」제10조 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9조·제18조·제25조·제29조에 따른 표시작업(원산지표시 제외)과 벌크화물의 사일로(silo)적입을 위한 포장제거작업의 경우 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나.「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른 재고조사 및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년 1회로 완화 다.「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른 보세구역운영상황의 점검생략 라.「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7조에 따른 장치물품의수입신고 전확인신청(승인) 생략						

「관세법」 제164조 제4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부 산 세 관



* 대표변경('21.09.30)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수신 동일냉장(주)(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70번길 10) (경유)

제목 검역시행장(수입식용축산물보관장) 지정변경 알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검역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2. 귀 사에서 신청하신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건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검역시행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검역시행장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검역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검역시행장 구분	변경사항				
급세경	(지정번호)	구분	변경전	변경후		
동일냉장(주)	수입식용축산물보관장 (제 P-10 호)	대표자 변경	최종태	최우순, 최홍래		

- 붙임 1.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별송).
 - 2.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 1부. 끝.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



주무관

이니연

수의시무관 김영지 축산물위생검역전결 2021, 10.7. 과장

협조자

시행 축산물위생검역과-5389 (2021.10.07)

접수

우 48941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6 2층, (중앙동4가) (중앙동4가) / http://www.qia.go.kr

전화번호 051-600-0411 팩스번호 051-600-0426 / rose1212@korea.kr

/ 비공개(7)

[붙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

[별표 14의3] <개정 2013.3.23>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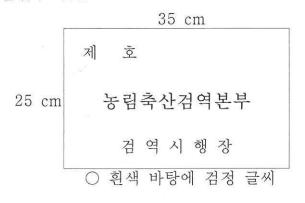
- 1. 검역시행장 내 소독 및 작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청결 유지, 소독·살충 등 검역관·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 2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에 입고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방역 본부에 알려야 한다.
- 3.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이 검역업무 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역 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4. 축산물가공장인 검역시행장에서는 검역이 완료된 후 같은 시설에서 가공하여야 하고, 다른 장소로 운송하려면 검역관에게 알린 후에 운송하여야 하며, 수출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에 따른 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이동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여야 하고, 지정검역물 외의 화물과 혼적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6. 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지정검역물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7. 동물검역시행장은 별지 제17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13서식에 따른 관리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검역기간 중 폐사한 동물 및 파기된 종 란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8.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별지 제17호의14서 식에 따른 수입화물(검역)표를 선하증권(B/L)단위로 부착하여야 한다.
- 9. 검역시행장 출입구와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는 별표 14의4에 따른 간판을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 10. 축산물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도축장 또는 식육가공장 등)에서는 종업원 등이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 11. 축산물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에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지정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이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12. 검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검역물을 사용하거나 검역시행장 밖으로 유출하여 서는 아니된다.
- 13.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은 검역물량 파악 제출 등 검역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5.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과 현물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방역조치 등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 16.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검역관련 교육 등에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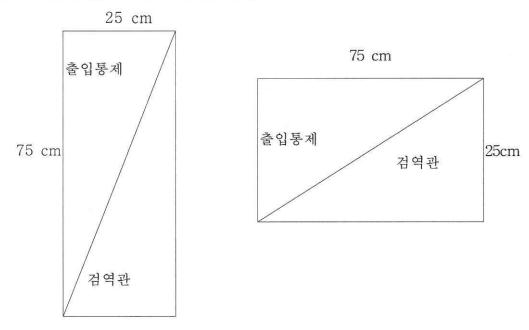
[별표 14의4] <개정 2013.3.23>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1. 검역시행장 출입구 간판



2.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앞 간판



○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붉은 사선 2줄

제 P-10 호

검역시행장지정서

대표성명	최우순, 최	생년월일	1937년	08월	13일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토	르481번길 9 (남	·천동)	## Table 1	

지 정 사 항

검역대상물	수입식용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70번길 10(신평동)							
회 사 명	동일냉장	동일냉장(주)						
지정신청면적	지정신청면적 대지 : 5,504.400 m² 검역시설 : 2,697.000 m²							
검역 시설	관리수의사 실	m² 10.440	냉동창고	m² 2673.600	세면장	6.480 m	탈의실	6.480 m²
지정 기간 2000.03.03								
지정 조건	관련규정 준수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합니다.

2021 년 10 월 07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인



확인(날인)	변경지정사항	당초지정사항	구 분	년 월 일
	검역창고 1428.8	검역창고 2143.2	반입물량 감소	2014/01/06
	냉동 1959.2	냉동 1428.8	수입물량증가	2014/05/02
	검역창고2673.6검역시설2697	검역창고1959.2검역 시설1982.6	물량증가	2016/01/27
	검역창고2673.6검역시설2697	검역창고1959.2검역 시설1982.6	물량증가	2016/01/27
	대표자(최우순, 최홍래)	대표자(최종태)	대표자 변경	2021/10/07
o o				9
			1	
			2 A	

동일냉장 주식회사 입 출고료 , 보관료 및 동결 기준표

구		중량		단 7	ㅏ (단위 : 원)	예시		
분	품목	(단위 : kg)	입고료	출고료	보관료	동결료	발췌료	에시
수 산 물	10 kg 기준 미만		100	100	12			
	10 kg 기	준 이상	kg 당 10	kg 당 10	kg 당 1.5			
	냉동 P/N (오징어)		162	162	12			18kg 이상 적용
	냉동 P/N (명태)		180	180	12			20kg B/G이상 적용
	멸치 , 잡어 등		70	70	4			2.5kg 이하 품목
	부피화물(가공류 등)		9,000	9,000	1,000			I.Q.F물품 , 가공류 등
	플라스틱 용기	25kg 이상	220	220	22	1100	220	고등어 (S/T) 등
~	大 용기	21~24 kg	200	200	16	900	200	
연 안	中 용기 -1	16~20 kg	160	160	15	750	160	
물	中 용기 -2	11~15 kg	145	145	12	600	145	수출 잡어 B/T 등
	小 용기	10kg	110	110	12	550	110	
	스티로풀 小	8~10 kg	145	145	12	600	145	오징어 7~8 kg
농	10 kg 기	준 미만	90	90	12			
· 축	10 kg 기	준 이상	kg 당 9.0	kg 당 9.0	kg 당 1.5			
산 물	규격 외 기	가공품	kg 당 15	kg 당 15	kg 당 1.5			
농.수.축산물 비규격품		9,000	9,000	1,000			파렛트 적재 기준 환산	

*기준 외 특이 사항 매뉴얼

1.할증료:

국.공휴일 (토요일 포함), 동절기 기준 18시 이후, 하절기 기준 19시 이후 작업 진행시

입출고료 50% 가산한다 . 국 공휴일 (토요일 포함) 동결 입고시에도 입고료 및 발췌료 50% 가산한다.

- 2. 포장비 적용 기준은 입고료 한번더 청구하여 진행한다.
- 3. 본 표는 수탁품에 한하여 자사품들은 예외로 적용한다.
- 4. 소액 세금 계산서 발행시 하한금액은 4,500원으로 정한다.
- 5.컨테이너 전기 사룡료는 1일 기준 30,000원으로 정한다.
- 6. 동일냉장 ㈜ 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 입치계약이 없는 경우, 당사에 비치된 임치약관의 내용으로 임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일냉장 주식회사

